

배포 일시	2022. 12. 5.(월)		
담당 부서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책임자	과 장 박진홍 (044-201-4016)
		담당자	사무관 정일웅 (044-201-4018)
			사무관 유찬호 (044-201-3998)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 12월 5일 10시 기준 상황

-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 현장조사 오늘부터 실시
-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대상에 오늘부터 곡물·사료운반차 추가
- 모든 자가용 유상운송 차량에 대해 오늘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 현장조사 오늘부터 실시

○ (조사개요) 오늘부터 국토교통부는 지난주 1차 조사시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 또는 차주 등의 업무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조사대상) 운송사의 경우, 1차 조사시 명령서를 교부받은 33개사*와 화주가 운송을 미요청한 것으로 조사된 11개사가 조사대상이며,

* 12.4.(토) 00:00 시점에 모두 업무복귀 기한 종료(12.2. 명령서 교부 완료)

- 화물차주의 경우 12.2.(금)까지 명령서 우편을 수령한 191명과 주소 미확보로 인해 문자로 명령서를 발송한 264명 등 총 455명*이 대상

* 455명은 12.4.(토) 00:00 시점에 업무복귀 기한 종료, 추후 수령현황에 따라 대상 확대

○ (조사계획) 국토교통부는 1차 조사시 명령서를 발부했던 순서대로 조사 일정을 수립하여 해당 운송사를 차례로 재방문할 계획임

□ 집단운송거부 동향

- 집단운송거부 관련 집회 등 참가인원은 **지난 토요일(12.3.) 3,700명**으로서 그 전주 토요일(5,000명)의 74% 수준이며,
 - **지난 일요일(12.4) 참가인원은 2,500명**으로서 그 전주 일요일(3,900명)의 64% 수준으로 집계됨

* 출처: 경찰청

□ 주요 조치사항

- (곡물·사료운반차에 대한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기존 일반형 화물차(8톤 이상), 견인형 화물차, 유조차에만 해당되었던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을 오늘부터 곡물·사료운반차로도 확대함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아울러 기존에 10톤 이상 견인형 화물차(사업용 및 자가용 유상운송허가 차량)만 해당되었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오늘부터 모든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차량에 대해서도 실시함
- (시멘트 수송차량 적재중량 상향) 12.2일부터 어제까지 총 582대의 시멘트 수송용 차량이 과적차량 임시 통행허가를 받아, 기존에 최대 적재중량이 26톤이었던 차량의 경우 이를 30톤까지 높일 수 있게 됨
 - 국토교통부는 12.1일 시멘트 수송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멘트 수송용 BCT(견인형 시멘트 수송 화물차), BCC(일체형 시멘트 수송 화물차) 차량을 집단운송거부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긴급 수송용 차량으로 지정한 바 있음

□ 물류 및 산업 동향

- (시멘트) 시멘트의 경우 평시에는 일요일 출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제(12.4.)는 긴급 출하물량을 중심으로 2.4만톤이 출하되었음
- (항만) 전국 12개 주요 항만 밤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지난주 월요일(11.28.) 반출입량의 188% 수준

<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단위: TEU) >

밤시간대 (전월7시-당월10시)	평시 (22.10)	11.24(목) 10시	11.25(금) 10시	11.26(토) 10시	11.27(일) 10시	11.28(월) 10시	11.29(화) 10시	11.30(수) 10시	12.1(목) 10시	12.2(금) 10시	12.3(토) 10시	12.4(일) 10시	12.5(월) 10시
반출입량 (평시대비율)	36,824	69,976 (190%)	18,086 (49%)	13,084 (35%)	6,208 (17%)	7,587 (21%)	18,145 (49%)	23,028 (63%)	23,733 (64%)	29,766 (81%)	30,241 (82%)	12,082 (33%)	14,295 (39%)
낮시간대 (당월10시-17시)	평시 (22.10)	11.24(목) 17시	11.25(금) 17시	11.26(토) 17시	11.27(일) 17시	11.28(월) 17시	11.29(화) 17시	11.30(수) 17시	12.1(목) 17시	12.2(금) 17시	12.3(토) 17시	12.4(일) 17시	12.5(월) 17시
반출입량 (평시대비율)	36,655	14,695 (40%)	10,451 (28%)	6,929 (19%)	2,788 (8%)	11,928 (33%)	13,630 (37%)	15,490 (42%)	18,007 (49%)	20,812 (57%)	16,346 (45%)	6,315 (17%)	-
전체 (전월7시-당월17시)	평시 (22.10)	11.24(목)	11.25(금)	11.26(토)	11.27(일)	11.28(월)	11.29(화)	11.30(수)	12.1(목)	12.2(금)	12.3(토)	12.4(일)	12.5(월)
반출입량 (평시대비율)	73,479	84,671 (115%)	28,537 (39%)	20,013 (27%)	8,996 (12%)	19,515 (27%)	31,775 (43%)	38,518 (52%)	41,740 (57%)	50,578 (69%)	46,587 (63%)	18,397 (25%)	-

- 평시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의 밤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지난주 월요일(11.28.)의 188% 수준

< 부산항 컨테이너 반출입량(단위: TEU) >

밤시간대 (전월7시-당월10시)	평시 (22.10)	11.24(목) 10시	11.25(금) 10시	11.26(토) 10시	11.27(일) 10시	11.28(월) 10시	11.29(화) 10시	11.30(수) 10시	12.1(목) 10시	12.2(금) 10시	12.3(토) 10시	12.4(일) 10시	12.5(월) 10시
반출입량 (평시대비율)	25,572 (100%)	48,956 (191%)	14,813 (58%)	11,504 (45%)	5,800 (23%)	6,515 (25%)	15,516 (61%)	19,819 (78%)	20,022 (78%)	24,279 (95%)	24,859 (97%)	10,862 (42%)	12,269 (48%)
낮시간대 (당월10시-17시)	평시 (22.10)	11.24(목) 17시	11.25(금) 17시	11.26(토) 17시	11.27(일) 17시	11.28(월) 17시	11.29(화) 17시	11.30(수) 17시	12.1(목) 17시	12.2(금) 17시	12.3(토) 17시	12.4(일) 17시	12.5(월) 17시
반출입량 (평시대비율)	20,392 (100%)	9,956 (49%)	8,406 (41%)	5,863 (29%)	2,542 (12%)	8,841 (43%)	10,442 (51%)	11,855 (58%)	12,204 (60%)	14,145 (69%)	11,997 (59%)	5,988 (29%)	-
전체 (전월7시-당월17시)	평시 (22.10)	11.24(목)	11.25(금)	11.26(토)	11.27(일)	11.28(월)	11.29(화)	11.30(수)	12.1(목)	12.2(금)	12.3(토)	12.4(일)	12.5(월)
반출입량 (평시대비율)	45,964 (100%)	58,912 (128%)	23,219 (51%)	17,367 (38%)	8,342 (18%)	15,356 (33%)	25,958 (56%)	31,674 (69%)	32,336 (70%)	38,424 (84%)	36,856 (80%)	16,850 (37%)	-

* 출처: 해양수산부

- (정유) 재고가 품질된 주유소는 수도권 53개, 그 외(강원·충남·충북 등) 28개로 총 81곳(12.4. 11시 기준)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 안내

비조합원 운전자에 대한 폭행, 협박, 차량 손괴, 정상운행 방해, 사업장 봉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 중앙수송대책본부(044-201-4802~03)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고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 및 정상 운행 복귀 적극 지원 예정

* 신고센터 URL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37153/INS.jsp?mode=write

※ 운송 거부자 신고 안내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 각 지자체에 적극 신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송 거부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신고센터 연락처: 붙임5)



붙임 1

항만별 장치율, 반출입량 동행(2.5 10:00 기준)

(단위 : TEU, %)

구분	화물 장치율						일일 반출입량						
	장치능력 (A)	장치량		장치율(%)			전일 17시- 금일 10시	전일 17시- 금일 10시	전일 17시- 금일 10시	전전일 17시- 전일 10시	평시('22.10월 동시간대) 반출입량		
		금일 10시 (B)	전일 (10시)	금일 10시 (B/A)	전일 (10시)	평시 ('22.10)	반입 (C)	반출 (D)	반출입 (C+D)	반출입 (E)	반입	반출	합계
합 계	941,283	611,395	610,263	65	64.8	64.5	4,864	9,431	14,295	12,082	17,263	19,561	36,824
부산항	592,335	402,788	404,671	68	68.3	68	4,214	8,055	12,269	10,862	12,155	13,417	25,572
인천항	112,921	86,582	86,879	76.7	76.9	76.3	491	1,261	1,752	515	2,318	2,785	5,103
광양항	110,856	74,051	72,530	66.8	65.4	61.4	0	0	0	228	1,390	2,012	3,402
평택· 당진항	39,281	20,543	18,575	52.3	47.3	59.3	39	14	53	147	710	705	1,415
울산항	29,464	15,102	15,147	51.3	51.4	55	4	22	26	16	351	309	660
군산항	8,006	1,204	1,199	15	15	13.3	25	11	36	0	82	77	159
마산항	3,700	171	188	4.6	5.1	5	4	11	15	0	0	0	0
대산항	8,255	1,926	1,926	23.3	23.3	26	0	0	0	253	113	120	233
포항항	24,041	7,472	7,594	31.1	31.6	26	0	2	2	0	22	20	42
동해항	1,150	350	350	30.4	30.4	26	13	13	26	0	8	7	15
목포항	8,022	474	458	5.9	5.7	5	64	38	102	61	106.8	104.8	211.6
경인항	3,252	732	746	22.5	22.9	22	10	4	14	0	7	4	11

붙임 2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환불 계획

□ 통행료 면제

- (면제기간) '22. 11. 24(목) 00:00 ~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 까지
- (면제구간) 고속도로 **쏘구간**(민자고속도로 포함, 지자체 민자도로 제외)
- (대상차량) 국토부 지정 **대체수송차량**으로
식별표지 및 **통행료 면제확인증**을 발급받은 차량
- (면제방법) **하이패스**는 정상 납부 후 **사후 환불**
* (선불카드) 사후 충전, (후불카드) 카드사 미청구
일반차로는 **즉시 면제** (식별표지 부착, 면제확인증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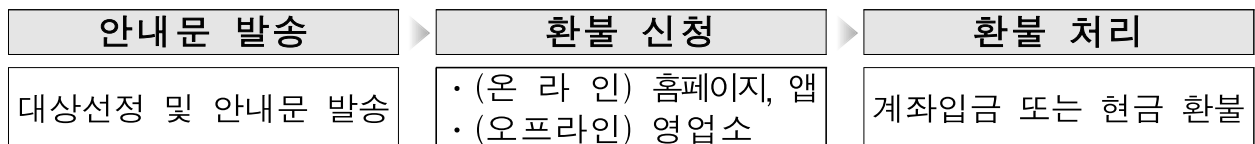
※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외부에서 대체수송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전면 유리창의 좌측 하단에 **식별표지**를 부착하고, **통행료 면제 확인증**을 요금소 직원에게 제시

□ 식별표지 및 면제 확인증 발급

- (발급장소)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 **쏘 영업소** (367개소)
- (발급시간) **09:00 ~ 18:00** (주말·공휴일 포함)
- (발급방법) **자동차등록증** 및 **신분증** 지참 영업소(사무실) 방문
대상차량 확인 후 식별표지 교부(전산등록·출력)

□ 통행료 환불

- (환불대상) 식별표지 발급 차량 중 기간 내 정상납부 이용차량
* 식별표지 발급 이전 통행료는 소급 적용
- (환불시기) 집단운송거부 종료 후 안내문 발송 시 별도 안내
- (환불절차)



□ **문의처** : 한국도로공사 1588-2504, 중앙수송대책본부 044-201-4802~03

붙임 3**통행료 면제 식별표지 및 면제확인증 서식**

- 식별표지** : 차량 전면 유리창의 좌측 하단에 부착

No. 예)1-23 (차량부착/게시용)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차량

- **사용기간** : 2022. 11. 24. 00:00 ~ 정상화 시까지
- **차량번호** : _____

위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임을 확인함

국토교통부장관 (인)

- 면제확인증** :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통행료 면제 확인증을 제시

No.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확인증

- **사용기간** : 2022. 11. 24. 00:00 ~ 정상화 시까지
- **차량번호** : _____
- **면제구간** : 모든 고속도로(재정·민자 고속도로)
- **이용방법** : 요금소 부스 제출 후 통과

위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임을 확인함

국토교통부장관 (인)

□ 허가 기준

- (대상) 최대 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트럭),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 탱크로리 유조차(톤수 제한 없음) 및 곡물·사료 운반차(톤수 제한 없음)
- (허가기간) 허가를 받은 자가용 화물차주는 7일('22.11.24~11.30)간 유상운송 영업을 할 수 있고, 집단운송 거부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별도의 방문 없이 7일 단위로 연장
- (허가신청 기간) '22.11.16.부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까지 허가신청이 가능

□ 허가 절차

- (허가신청) 허가를 받으려는 운전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 허가신청서를 관청에 제출
- (허가증 부착) 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유상운송 허가증을 관청 으로부터 발급 받아 자동차 앞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

□ 허가 혜택

- (통행료 면제)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
*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12.5일부터 적용
- (비상수송) 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국토부 비상대책본부를 통해서 긴급물량을 배차 가능
 - 비상수송 물량이 있는 경우 차주에게 순차적 연락 예정

붙임 5**운송거부자 신고 담당자 연락처**

기관명	성명	사무실 연락처	e-mail주소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최용민 주무관	044-201-4018	skrkwk11@korea.kr
서울특별시 물류정책과	박진원 주무관	02-2133-4094	freedom@seoul.go.kr
경기도 물류항만과	강동주 주무관	031-8008-3864	rallyxyzgx57@gg.go.kr
부산광역시 물류정책과	김태경 주무관	051-888-7632	ktkim97@korea.kr
인천광역시 물류정책과	홍형표 주무관	032-440-3832	0326hhp@korea.kr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	이미림 주무관	053-803-4041	yml4832@korea.kr
광주광역시 교통정책과	김 건 주무관	062-613-4092	gun1424@korea.kr
울산광역시 교통기획과	김태자 주무관	052-229-4114	taeyeowoo@korea.kr
대전광역시 운송주차과	박준상 주무관	042-270-5832	foolmoon@korea.kr
충청남도 교통정책과	송창훈 주무관	041-635-2844	chsong1224@korea.kr
충청북도 교통정책과	장은수 주무관	043-220-4265	eielectro@korea.kr
전라남도 도로교통과	강성진 주무관	061-286-7461	gsj83@korea.kr
전라북도 교통정책과	김대환 주무관	063-280-3621	yotta@korea.kr
경상남도 교통정책과	김재훈 주무관	055-211-4144	senatus@korea.kr
경상북도 교통정책과	이희천 주무관	054-880-2667	yi2000@korea.kr
강원도 교통과	함석영 주무관	033-249-3544	hsy3415@korea.kr
제주도 교통정책과	김보윤 주무관	064-710-2465	kbv6089@korea.kr